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지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3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0.

발 의 자 : 조지연 · 안철수 · 강선영
김기웅 · 김기현 · 김위상
김 건 · 최수진 · 배준영
박형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.

그런데 2024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으로, 전체 근로자 평균의 1/8, 최저임금의 1/5 수준에 불과하여 중증장애인의 빈곤이 고착화 된다는 의견이 있음. 또한,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를 삭제하고,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및 제24조).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정부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수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최저임금의 적용 제외) 다 <u>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1. <u>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</u></p> <p>2. <u>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</u></p> <p>제24조(정부의 지원)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24조(정부의 지원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정부는 정신장애나 신체장 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사용자 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해 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 원 수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</u></p>

한다.